

구약논찬

제 16권 1호(통권 35집) 2010년 3월 31일

전 정진(성결대) 출애굽기 21장 2-11절과 신명기 15장 12-18절에 나타난 종의 방면 법	54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 제 7년째 방면되는 것을 규정한 법은 오경에 두 번 나타난다(출 21: 2-11; 신 15: 12-18). 본 연구에서는 최종 본문의 문학적 맥락을 진지 하게 취합과 동시에 공시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출애굽기 21장 2-11절과 신명기 15장 12-18절에 나타난 종의 방면 법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Chun, Jung Jin Comparison of the Manumission Laws in Exodus 21: 2-11 and Deuteronomy 15: 12-18	54

출 21장 2-11절과 신 15장 12-18절에 나타난 종의 방면 법

전 정진 | 성결대

1. 들어가는 말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 제 7년째 방면되는 것을 규정한 법은 오경에 두 번 나타난다: 출 21장 2-11절과 신 15장 12-18절.¹⁾ 이 두

1) 이스라엘 종의 방면 법과 이방인 종에 대한 처우에 관한 법이 레 25장 39-46절에 나타나지만, 레위기 본문은 7년째 방면이 아니라 회년법과 관련된 문맥에서 이를 제시한다. 출 21장 2-6절과 신 15장 12-18절 두 본문은 거의 축어적으로(verbatim) 동일한 구절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레위기 본문은 그렇지 않다.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레위기 본문에 대한 연구 및 비교는 제외하였다. 류흐터(M. Leuchter)는 그의 최신 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M. Leuchter, "Manumission Laws in Leviticus and Deuteronomy: The Jeremiah Connection," *JBL* 127 (2008), 635-53쪽. 또한 레빈슨(B. Levinson)은 그의 최근 연구에서 출 21장 2-11절에 나타나는 언약법전(CC)의 종의 방면 법과 성결법전(HC)에 나타나는 동일한 법(레 25: 33-46)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B. M. Levinson, "The Birth of the Lemma: The Restrictive Reinterpretation of the Covenant Code's Manumission Law by the Holiness Code (Leviticus 25: 44-46)," *JBL* 124 (2005), 617-39쪽. 또한 반 시터즈(J. Van Seters)는 CC와 HC 그리고 D(신명기)에 나타나는 종의 방면 법의 우선순위를 다루었다. J. Van Seters, "Law of Hebrew Slave: A Continuing Debate," *ZAW* 119 (2007), 169-83쪽. 출애굽기 본문(출 21: 2-11)이 포로 후에 기록되었다고 이해하는 반 시터즈(John Van Seters)는 최근 그의 연구에서 신 15장

책에 나타나는 각각의 법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차이점들이 나타나며, 여러 학자들이 이 차이점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이 차이점들은 역사 비평학적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역사 비평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주의자가 그 이전에 존재하던 출애굽기 본문(출 21: 2-11)을 후대에 개정하여 신명기 본문(신 15: 12-18)을 편집하였다고 주장한다.²⁾ 즉 신 15장 12-18절의 법은 출 21장 2-11절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인도주의적 입장의 신명기주의자가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³⁾

본 연구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본문의 문학적 맥락을 진지하게 취함과 동시에, 공시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출애굽기와 신명기 각각에 나타나는 종의 방면 법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일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⁴⁾

2. 출애굽기에 나타난 종의 방면 법

12-18절이 출 21장 2-11절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신 15장 12-18절로부터 출 21장 2-11절로 발전하였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그는 신명기주의자에 의한 신명기 본문(신 15: 12-18)을 포로 후에 개정한 것이 출애굽기 본문(출 21: 2-11)이라고 주장하였다.

- 2) 신명기 역사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에 관하여는 이 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제 29집(2008), 67-86쪽 참조.
- 3) 또한 메이즈(A. D. H. Mayes)는 신명기의 종의 방면 법(신 15: 12-18)은 출 21장 2-6의 법을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는 출애굽기에서 낮은 사회 계층민이었던 '히브리 종'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여자의 지위도 남자와 동등하게 간주되었기에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한다. A. D. H. Mayes,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9), 249-50쪽.
- 4) 본문을 구성하는 자료들의 연대와 기원, 그리고 본문의 성장과 발전과정, 그리고 언제 어디서 최종 편집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밝히기는 대단히 어렵다. 학자들이 가진 전제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비평학적 접근방법 또는 통시적 접근방법과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형태의 본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공시적 접근방법은 취사선택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문제를 다룬다. 이 두 접근방법은 전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이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발생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문의 문학적 맥락을 진지하게 다루는 공시적 접근방법이 통시적 접근방법보다 선행되어야만 한다. 본문 뒤의 자료들의 기원과 형성 및 편집과정을 탐구하는 통시적 접근방법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대한 진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J. M. Sprinkle, *The Book of the Covenant: A Literary Approac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1-16쪽 참조.

1) 출 21장 2-11절의 본문 번역

²네가 히브리 종(עֶבֶר עֶבֶר 에베드 이브리)을 샀을 경우(כִּי 키)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의 몸으로 나갈 것이다(אֵין 예체). ³만일(אם 임) 그가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אֵין 예체). 만일(אם 임) 그가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면(אִשָּׁה בָּעַל 바알 잇샤)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בְּאִשָּׁתָּה 바야츠아). ⁴만일(אם 임) 그의 주인이 그에게 여자를 주어 그 여자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자식들은 그 여자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며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אֵין 예체). ⁵그러나 만일(אם 베임) 그 종이 정녕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אֵין לֹא 예체)'라고 하면 ⁶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אֱלֹהִים 엘로힘)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또 그를 그 문이나 그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영원히(לְעַלְמַי 레올람)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⁷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אִמָּה 아마)으로 팔았을 경우(כִּי 베히) 이 여자는 그 종들의 나감 같이(כְּצִמְתּוֹת הָעֶבְרִים 케체트 하아바딤) 나가지 못할 것이다(אֵין לֹא 로 테체). ⁸만일(אם 임) 자신을 위해 지명한 그 여자를(אִשָּׁרָהּ לוֹ 아쉐르 로 예아다) 주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⁶ 그 여자를 속량할 것이다. 그가 그 여자를 부당하게 속인 것이 되었으니(בְּבִגְדוֹ-בְּבִגְדוֹ 베비그도 바) 외부인에게는(לְעַם נְכָרִי 레암 노호리)⁷ 그 여자를 팔지 말 것이다. ⁹그러나 만일(אם 베임) 자기 아들을 위해 그 여자를 지명하였으면(אִשָּׁרָהּ יִיאֲתֵנָּה 이아텐나) 딸들에 대한 율례를 따라(כְּבְּשֻׁרְתֵי הַבְּנוֹת 케미슈파트 하바노트) 그 여자를 대하여야 할 것이다. ¹⁰만일(אם 임) 그(주인)가 다른 여자를 취하게 될지라도

5) LXX는 “하나님의 법정”, 시리아 역본은 “재판관들”로 번역했다. 이상의 번역들은 “재판관들” 또는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대표하는 자들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번역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이 아니라 설명이라 할 수 있다. J. I. Durham, *Exodus*. (Waco: Word Books, 1987), 311쪽.

6) 이 번역은 케레(אִשָּׁרָהּ לוֹ אִשָּׁרָהּ לוֹ אִשָּׁרָהּ לוֹ)를 번역한 것이다. 케티브(אִשָּׁרָהּ לוֹ אִשָּׁרָהּ לוֹ אִשָּׁרָהּ לוֹ)는 “만일 그 여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그 여자의 주인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된다. 케티브보다 케레가 문맥상 더 자연스러우나, 케티브와 케레 모두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개역개정판 한글성경은 **יער**(야아드/지명하다)를 **יָדָה**(야다/알다 또는 성적으로 관계하다)로 취한 페쉬타의 번역을 따라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하였다.

7) RSV는 **לְעַם נְכָרִי**(레암 노호리)를 “to a foreign people”이라고 번역하였으며, Targum Onkelos는 **אֲחֵרִין אֲחֵרִין**(리그바르 아하람/to another man), 즉 “주인의 가족 외의 사람”이라고 번역하였다. **לְעַם נְכָרִי**(레암 노호리)에 대해서는 아래 논의를 참조하라.

(חֶמֶד 잇카흐), 그 여자의 음식(שֶׁאֵר שְׂעֵרָה 웨에라)과 의복(כֶּסֶת קֵשֶׁת 케수타)과 부부로서의 권리(עֲנֻתָּה 오나타)를 줄이지 말 것이다.⁸⁾ ¹¹그러나 만일(אִם 베임) 그가 이 세 가지를 그 여자에게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자는 몸값을 내지 않고 값을 치르지 말고 나갈 것이다.

2) 출 21장 2-11절의 구조

출 21장 2-11절은 출 24장 4, 7절에 언급된 “언약의 책”(סֵפֶר הַבְּרִית) 세 페르 하베리트)의 일부분으로, 그 중에서도 21장 1절의 표제에 이어 소개되는 일련의 “율례”(מִשְׁפָּטִים 미슈파팀, 출 21: 1) 중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율례이다.⁹⁾ 출 21장 2-11절에 나타나는 히브리 종의 방면 법은 크게 히브리 종(עֶבֶד עִבְרִי 에베드 이브리)에 관한 규례(2-6절)와 여종(אִמָּה 아마)에 관한 규례(7-11절) 두 부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규례는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하는 접속사 כִּי(키)/... 하였을 경우)에 의해 구분된다. 이 두 단락은 다시 이에 종속되는 경우를 소개하는 접속사 אִם(임/만일)에 의해 세분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히브리 종(עֶבֶד עִבְרִי 에베드 이브리)에 관한 규례(출 21: 2-6절)〉

2 כִּי 히브리 종의 방면 원칙: 7년째 방면

3 אִם 사례1: 단신으로 종살이 들어 온 경우 단신으로 방면

אִם 사례2: 아내와 함께 종살이에 들어온 경우 아내와 함께 방면

4 אִם 예외 사례: 종살이 중 주인이 종에게 여자를 주어 자식을 낳은 경우 아내와 자식은 주인집에 남고 본인만 방면

8) 단순히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음식과 옷은 모든 종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 언급된 음식(שֶׁאֵר שְׂעֵרָה)은 아무 음식을 지칭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의복(כֶּסֶת קֵשֶׁת)은 아무 옷이 아니라 아내에게 합당한 화려한 옷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עֲנֻתָּה(오나)의 명확한 의미는 규명하기 어렵다. “동침하는 것” 또는 “화장품” 등 다양한 번역이 제시되었다. R. A. Cole, *Exodu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3), 166-67쪽; J. P. Hyatt, *Exodus* (Grand Rapids: Eerdmans, 1971), 230쪽.

9) 출 21장 1절은 21장 2절-23장 19절에서 소개되는 일련의 율례(מִשְׁפָּטִים 미슈파팀)에 관한 표제이기에 종의 방면의 법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율례(מִשְׁפָּטִים 미슈파팀)의 범위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자료비평 학자들은 מִשְׁפָּטִים(미슈파팀)을 21장 2절-22장 16절[개역개정 17절]의 일부분을 지칭한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면, 아이스펠트(Eissfeldt)는 미슈파팀을 경우법(case law)으로 이해하여 제의법(cultic law)을 미슈파팀에서 제외한다. O. Eissfeldt,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65), 213-15쪽. 그러나 מִשְׁפָּטִים(미슈파팀), דְּבָרִים(데바림), חֻמּוֹת(후킴), מִצְוֹת(미츠보트), תּוֹרָה(토라)와 같은 어휘들을 단순히 사전적 근거에 의해 세속적인 결의론적 법, 제의법, 도덕법, 필연법(apodictic law)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관한 논의는 J. M. Sprinkle, *윗글*, 31-34쪽 참조.

5 **וי** 위의 예외 사례에 대한 대안: 귀 뚫는 의식을 한 후 주인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종살이

<여종(**אמה** 아마)에 관한 규례(출 21: 7-11)>

7 **כי** 여종은 방면 원칙: 불허

8 **אם** 사례1: 주인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 속량(외부인에게는 팔 수 없음)

9 **אם** 사례2: 여종을 주인의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지명한 경우: 딸과 같이 대우

10 **אם** 사례3: 주인이 다른 여자를 취할 경우: 아내의 신분에 상응하는 대우

11 **אם** 사례4: 위의 세 가지 대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몸값을 물지 않고 방면

3) 히브리 종(**עבד עברי** 에베드 이브리)에 관한 규례(출 21: 2-6)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난으로 인해 빚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나 아내 또는 자식들을 팔아 빚을 갚아야만 했다(출 22: 2[개역 3절], 왕하 4: 1; 느 5: 1-5).¹⁰⁾ 출 21장 2-6절에 소개되는 종은 빚을 상환하지 못하여 종살이를 하게 된 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 소개되는 히브리 종은 엄밀히 말하면 종이나 노예라기보다는 빚을 상환하기까지 채권자를 위하여 일하는 머슴에 해당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¹¹⁾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출 21: 2-6)에서 몇 가지 윤리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첫째는 주인이 종살이하는 종에게 여자/아내를 주어 가정을 꾸미게

10) 출 22장 2절[개역 3절]에서 소개된 도적질로 인해 종이 되는 경우 역시 도적질한 물건을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 몸을 판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가난으로 인해 종으로 팔렸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오거나 가난 또는 빚을 상환하지 못함으로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I. Mendelsohn, "Slavery in the OT," *IBD*, vol. 4(1962), 384쪽.

11)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살이를 살펴보는 것은 출 21장 2-6절에 소개된 종살이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된다. 바벨론의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다. 함무라비 법은 주인이 자기 종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종을 죽였을 경우 그 주인에게 이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만 하면 모든 책임이 해소되었다(Law of Hammurabi §116). *ANET*, 171쪽 참조. 종은 주인의 처분에 따라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동족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종살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 21장 2-6절에 나타난 이상은 고대 근동의 종 제도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돈을 꾸어주었을 경우 그들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이스라엘 동족들이 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꾸어준 돈의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되었다(출 22: 24/한25; 레 25: 35-37; 신 23: 20).

한 것은 주인이 종을 배려하는 인도주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출 21: 4). 하지만 6년의 종살이가 끝난 후 이 종이 이미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을 주인집에 남겨놓고 남편만 방면되는 것은 가정을 강제로 해체시키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자식들 모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비 인도주의적인 행위로 보인다. 둘째, 아내와 자식들과의 생이별을 방지하기 위해 남편에게 제시된 방안도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모두 함께 살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남편이 평생을 주인집에서 종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그 대가가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출 21: 5-6). 그 외에도 본문의 해석상 제기되는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살펴보고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출 21장 2절은 6년 주인을 섬긴 후 7년째 방면되는 히브리 종의 방면 원칙을 소개한다.¹²⁾ 출 21장 2절의 미완료(“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עֲבַד? 아야보드)는 허용의 의미를 지닌다. 작은 빛은 6년보다 짧은 기간의 종살이로 청산될 수 있었다. 아무리 큰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갚기 위해 섬기는 기간은 6년을 넘길 수가 없었다. 6년을 섬기게 되면 빛은 청산되고 그 종은 자유롭게 된다. 따라서 출 21장 2절은 강제로 영원히 종살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절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내에서 동족 이스라엘인을 무기한으로 종살이할 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 허락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엄격히 제한된 일종의 머슴살이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는 자유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이상을 보여준다.

12) 여기서 히브리(עֲבַד? 이브리)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확한 의미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다. 히브리라는 용어가 과거에는 인종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었었지만 설형문자 문학에서의 아카드어 판독이 이루어진 후부터 이 용어는 사회 하층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엄원식, “하비루의 반란과 혁명: 아마르나 서판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 5집(1998), 133-201쪽. M. Greenberg, *The Hab/piru*.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5); N. P. Lemche, “Hebrew,”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1992), 95쪽 참조. 그러나 이 용어의 구약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면 히브리는 한결같이 이스라엘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 땅에서 외국인 종 또는 하층민들이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요셉은 히브리인이라 불렸다(창 39: 14, 17; 41: 12; 43: 32; 출 1: 15, 16, 19; 2: 6, 7 등). 히브리(עֲבַד? 이브리)가 인종을 지칭하는 용어이든 아니면 하류 사회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이든지 간에 출 21장 2절에 언급된 히브리 종은 이스라엘인 종을 지칭하고 있다. 이는 또한 2절과 평행으로 나타나는 신 15장 12절에 의해 뒷받침 된다: “만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려서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출 21장 3절은 지극히 당연한 사례를 먼저 제시한 후, 이어서 보다 민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종이 단신으로 종살이에 들어왔을 경우, 그는 6년을 섬긴 후 당연히 방면된다(사례1). 또한 종이 종살이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의 아내도 함께 남편과 함께 종살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이 종살이를 마쳤을 때 함께 방면된다(사례2). 본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물론 함께 방면되었을 것이다.

출 21장 2-3절은 명백히 인도주의적 의도를 보여주지만, 출 21장 4-6절은 2-3절만큼 그리 명백히 인도주의적 의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례(출 21: 4)는 6년을 섬긴 후에도 방면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소개한다. 즉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종살이에 들어왔다가 종으로 섬기던 기간 중에 주인이 여자를 주어 결혼을 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종은 신부의 결혼 납폐금을 지불할 수 없기에 주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실제로 결혼을 하기 쉽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출 22: 15[한 16] 참조). 여기서 주인이 아내로 준 여자는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는 종으로 아마도 이방 출신의 여종으로 보인다.¹³⁾ 이방 여종은 동족 히브리 종과는 달리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었으며,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었다(레 25: 44-46 참조). 이러한 조치는 종의 외로움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함으로 종에게도 물론 유익하였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도 이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로 인해 소유가 늘어나고 또 노동력이 증대될 것이므로 이익이 되었을 것이다.¹⁴⁾ 문제는 종살이가 끝났을 때 발생한다. 종살이가 끝난 후 남종은 자유를 얻어 방면될 수 있었으나,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집에 남겨지게 되며, 따라서 이 가족들은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종살이가 끝나게 되면 이 종은 힘든 결정을 하여야만 하였다: 사랑 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홀로 자유를 얻어 나가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살며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종살이를 하여야만 하였다. 이것이 마지막 사례로 출 21장 5-6절에 소개된다. 이 종이 가족과 이별하지 않고 영원

13) R. A. Cole, *윗글*, 165쪽.

14) A. Phillips, "The Laws of Slavery: Exodus 21: 2-11," *JOT* 30 (1984): 51쪽.

히 주인을 섬기기를 선택할 경우 이 종은 특별한 의식을 행한 후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주인은 그 종을 하나님께, 즉 성소로 데리고 가서 성소의 문이나 문설주에서 종의 귀에 구멍을 뚫는 의식을 공식적으로 거행함으로¹⁵⁾ 영원히 주인을 섬길 수 있었다.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한 종의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단순히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귀는 청각 기관으로 히브리어에서 “듣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지닌다.¹⁶⁾ 제사장들이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의 오른쪽 컷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는 의식이 나타나는데(출 29: 20; 레 8: 23), 이것은 야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야웨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여야 하며 거룩한 길을 걷도록 헌신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¹⁷⁾ 문과 문설주는 단순히 귀에 구멍을 뚫기 위한 받침대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이나 문설주가 단순히 받침대의 역할을 위해서라면 문이나 문설주보다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table)이나 판자 등의 도구들이 있었기에, 구태여 이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성소의 문이나 문설주는 성소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법으로 종이 주인에게 영원히 순종하고 주인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의식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주인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섬기도록 하는 이 규례는 일견 가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인도주의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의 집을 떠나 자유롭게 된 종은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게 된다. 고대의 상황은 대단히 가혹하였기에 주인을 떠난 이 사람은 자유를 얻기는 하였지만 외롭거나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하기 십상이었다. 종살이 하던 이 종이 종살이가 끝날 때까지 속량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이 종의 집은 가난하였음이 거의 틀림이 없으며, 어쩌면 그를 부양할 가족이 없었을

15) F. C. Fensham, "New Light on Exodus 21: 6 and 22: 7 from the Laws of Eshnunna," *JBL* 78 (1959), 160-61쪽. 반면에 스프링클(Sprinkle)은 종의 귀에 구멍을 뚫은 곳은 성소가 아니라 주인집의 문과 문설주라고 주장한다. Joe M. Sprinkle, *윗글*, 55-56쪽.

16)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의 귀를 자른 것이 LH §282에 소개된다.

17) 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Eerdmans, 1979), 143쪽.

18) 스프링클(Sprinkle)은 귀에 구멍을 뚫는 의식이 주인집에서 행해졌다고 보며, 이것은 이 종이 주인집의 일원으로 영원히 소속되어 집의 주인에게 순종을 맹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J. M. Sprinkle, 55-56쪽; R. A. Cole, *윗글*, 166쪽.

지도 모른다.¹⁹⁾ 이 사람은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기 십상이었으며, 이전 주인보다 관대한 주인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 규례는 주인에 의해 아내가 주어진 종이 종살이 기간이 끝난 후 억지로 가족과 이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종은 자신이 원하지만 하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주인의 집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허락되었다.²⁰⁾

물론 출애굽기 본문에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스프링클(Sprinkle)은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여러 경우들을 제시한다.²¹⁾ 첫째, 주인이 관대하게 여종과 그의 자녀들을 남종과 함께 방면할 수 있었다. 둘째, 일단 방면된 종이 충분히 돈을 벌어서 그의 가족들을 속량할 수도 있었다. 셋째, 마치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반을 14년 동안 섬긴 것처럼(창 29장), 이 종도 자신의 가족의 방면을 위하여 자원하여 또 다른 기간 동안 주인을 섬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방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²²⁾ 여기 소개되는 규정은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주인에게 비현실적인 윤리적 요구를 부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종이 주인의 집에 종으로 영원히 머무는 것은 그다지 가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 여종(אִמָּה אֲרָמִית)에 관한 규례(출 21: 7-11)

출 21장 7-11절에 소개되는 여종(אִמָּה אֲרָמִית)에 관한 규례는 앞에 소개된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와는 달리,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하더라도 방면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여종에 관한 규례는 바로 앞에 제시된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와 그 내용이 상치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출 21장 2-6절을 히브리 남종에 관한 규례를 다루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출 21장 7절에서 여종이 방면될 수 없다는 규정이 앞에 나오는 종들의 방면과 비교되어 언급

19) 신 15장 13절은 이 종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관대히 베풀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가 새로이 빚을 지고 종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0) A. Phillips, 윗글, 51쪽.

21) J. M. Sprinkle, 70-71쪽.

22) 요세푸스는 이와 같은 종신 종과 그의 가족들이 회년에 방면되었다고 진술한다(레 25장 참조). 탈굄 요나단(Targum Jonathan)은 אֲרָמִית(레올람/영원히)을 “회년이 될 때까지 또는 그 주인이 죽을 때까지”로 해석한다. Mishna Kiddushin 1.2 참조. I. Mendelsohn, 윗글, 390쪽.

되기 때문에,²³⁾ 대부분의 학자들은 출 21장 2절에 나타나는 히브리 종(עֶבֶר עֶבְרִי 에베드 이브리)을 단순히 남종으로 간주한다.²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대 이스라엘에 남종의 경우와 여종의 경우 각기 다른 기준의 방면의 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2-6절은 남종에 관한 규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방면의 법을 소개하는 것이며, 단지 이를 남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⁵⁾ 또한 7-11절은 일반적인 여종의 방면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팔린 특별한 경우의 여종(אִמָּה 아마)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⁶⁾ 따라서 7절에 언급

23) “... 이 여자는 그 종들의 나감 같이(עֶבְרִי עֶבְרִי 케체트 하아바딤) 나가지 못할 것이다”(출 21: 7).

24) J. Van Seters, 169쪽. 개역개정판 한글성경도 עֶבְרִי עֶבְרִי(케체트 하아바딤)을 “남종 같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 종들의 나감 같이”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다.

25) 구약에서 남성 명사가 남성과 여성 명사 모두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출 21장 4절에서 “아들들이나 딸들”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아들들”로 지칭하고 있다. 신명기 15장 12-18절에 소개된 종의 방면에 관한 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네가 히브리 종(עֶבְרִי עֶבְרִי 에베드 이브리)을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기고 ...”로 시작하는 출 21장 2절과는 달리 동일한 종의 방면의 법을 소개하는 신 15장 2절은 “אִמָּה עֶבְרִי אוֹ עֶבְרִי (하이브리 오 하이브리야/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려온 경우 그가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으로 시작하여 남종과 여종이 공히 6년을 섬긴 후 제 7년째 방면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신명기 본문에 히브리 여자가 추가된 것은 히브리 종(עֶבְרִי עֶבְרִי 에베드 이브리)에 관한 규례에 이어 여종(אִמָּה 아마)에 관한 규례를 연이어 소개하는 출애굽기 본문이 마치 히브리 남종과 히브리 여종의 방면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 15장 12-18절이 출 21장 2-11절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6)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종을 지칭하는 가장 흔한 용어는 עֶבֶר(에베드)이며, 이에 상응하는 여종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אִמָּה(아마/여종)와 אִמָּה עֶבְרִי(하이브리)가 사용되었다. 학자들은 구약에서의 사용 용례에 근거하여 이 두 단어에 대한 어의적 구분을 하였다. 여러 학자들(Jepsen, Cohen, Riesener)과 TWAT 그리고 여러 주석들을 참조하여 정리한 R. Schultz, “אִמָּה,” DOTTE,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1997), 418-421쪽을 보라. 이 용어들은 때때로 상호 교체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אִמָּה(아마)는 대체적으로 종으로서 여성의 속성, 즉 보호의 필요성, 연약함, 성적 매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며, אִמָּה עֶבְרִי(하이브리)는 여종이 주인의 소유 또는 노동력을 강조될 때 사용된다. 이 용어들이 자신을 지칭하여 사용될 때, אִמָּה(아마)는 말하는 자가 보호와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내며, אִמָּה עֶבְרִי(하이브리)는 말하는 자가 복종과 섬김 준비가 되었음을 내포한다. 또한 אִמָּה(아마)는 결혼을 한 여종 또는 결혼할 수 있는 여종을 지칭하며, אִמָּה עֶבְרִי(하이브리)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하갈은 대체적으로 사라의 시녀(אִמָּה עֶבְרִי 하이브리)로 언급되지만(창 16: 1, 2, 3, 5, 6, 8; 25: 12), 아브라함으로 인해 태어난 하갈의 아들이 가족 분쟁의 요인으로 언급될 때는 여종(אִמָּה 아마)으로 지칭되었다(창 21: 10, 12, 13). 라반은 그의 딸 리헬이 결혼

된 여종(אִמָּה) 아마)은 노동을 위해 팔린 통상적 의미의 종이 아니라 특별히 결혼을 목적으로 팔린 여종이기에 통상적인 종들처럼 7년째 방면될 수 없었다.

출 21장 7절은 아버지가 결혼을 목적으로, 아마도 어린 나이의 딸을 매입자(주인) 또는 매입자(주인)의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해 딸을 여종(אִמָּה) 아마)으로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딸을 판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여 딸을 부양하기가 어려웠고 또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⁷⁾

결혼을 목적으로 (아마도 어려서) 팔려온 이 여자는 결혼이 성취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결혼하기로 지명된 “신부” 또는 “며느리”의 신분(אִשָּׁה קָלָה)으로 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다. 스프링클(Sprinkle)은 אָבָד(아아드)를 결혼을 목적으로 여종을 배우자로 지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⁸⁾ 주인의 확대된 가족(extended family)의 남자 구성원들 중에서 이 여종을 지명한 자가 값을 치르고 결혼할 수 있었다.

결혼을 목적으로 팔려온 여종(אִמָּה)이 일단 그 집의 주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 여자는 더 이상 종으로 간주되지 않고 주인의 아내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출 21장 7절의 원칙과 출 21장 8-11절에 암시적으로 내포된 의미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팔려온 이 여종이 그 집의 젊은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녀는 더 이상 종으로 간주되지 않고 며느리, 즉 딸(בַּת) 바트의 대우를 받게 된다(출 21: 9; 사례 2). 하지만 만일 그녀가 그 집의 남자 구성원 아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되게 되면, 그녀는 그 집에 더 이상 종으로 머무르지 않게 된다(사례1). 이 경우 여종은 אִמָּה אֲבוֹתָא(암 노호리)에게 파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이 규정은 외국인(foreign people)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기보다는 이 여종의 가족이 아닌 다른 외부인들(unfamili-

할 때 빌하를 리헬의 시녀로 주었다(창 29: 29). 하지만 리헬이 아들을 낳을 목적으로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을 때 리헬은 빌하를 여종이라고 불렀다(창 30: 3). 그러나 곧이어 내레이터는 빌하를 리헬의 시녀라고 지칭한다(창 30: 7). 롯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자신을 시녀라고 언급하지만(룻 2: 13), 후에 타작마당에서 기업무를 것을 요청할 때는 자신을 여종이라 지칭한다(룻 3: 9). R. Schultz, 윗글, 419-20쪽 참조.

27) 이 여종이 스스로 자기를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팔았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여자의 신분이 일차적으로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그녀의 주인(또는 남편)에게 종속되었음을 보여준다.

28) J. M. Sprinkle, 71쪽.

ar/strange people)에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창 31: 15 참조).²⁹⁾

또 주인과 일단 결혼을 하였던 여종이 다른 여자에 의해 **קַלְיָהּ**(갈라/신부 또는 며느리)의 위치에서 물러나게 될지라도, 이 여종은 아내의 신분에 상응하는 음식과 의복과 부부로서의 권리, 이 세 가지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사례 3).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한 주인이 이 여종에게 아내의 신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지 않을 경우, 그녀에게 자유가 주어져야만 하였다. 그녀는 그 집에 더 이상 종으로 머무르지 않고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집에 자유민으로 머물든지, 아니면 방면되든지 이 법은 여종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도덕적 배려를 반영한다.

5) 출 21장 2-11절의 내러티브 맥락

출 21장 2-11절의 종의 방면 법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특징들은 출 21장 2-11절이 속한 내러티브 맥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출 21장 2-11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근동의 법들 중에서 종에 관한 주제로 시작되는 법적 문서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³⁰⁾ 히브리 종의 방면 법이 언약의 책(**סֵפֶר הַבְּרִית** 세페르 하베리트) 중에 나타나는 율레(**לְוִיִּם** 미슈파팀)의 서두에 나타난다. 둘째, 출 21장 2-11절에서 종의 방면을 의미하는 용어로 히브리어 어근 **אָצַח**(야차/나오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8번). 셋째, 출 21장 2-3절은 2인칭 단수 동사로 시작하였지만,³¹⁾ 4절부터는 주어가 2인칭 단수 “너”가 아니라 3인칭 단수 “주인” 또는 “그”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상의 특징은 모두 출 21장 2-11절의 즉각적인 맥락(출 19-24장)과 보다 넓은 맥락(출 1 - 18장),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29) BDB, 648-49쪽; J. P. Hyatt, *윗글*, 230쪽.

30) 참무리비 법전은 종에 관한 주제로 법전을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종에 관한 주제로 끝을 맺는다. 에슈nun나(Eshnunna)법도 종에 관한 주제를 끝 부분에 가서야 언급한다. 중기 앗수르 법(Middle Assyrian Laws)은 종에 관한 법을 대단히 드물게 언급할 뿐이다. A. Phillips, *윗글*, 52-53쪽.

31) 3절(“만일 그가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만일 그가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면 그의 아내는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에는 2인칭 동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단순히 종의 상황을 서술하기 때문에 이는 2절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있다.³²⁾ 출애굽기의 주제는 다름 아닌 애굽의 종살이하던 집(מִבְּתַח עֲבָדִים)으로부터 나옴/구원(יָצָא/יָצָא יְצִיאָה)이며, 이 주제는 십계명의 서언(출 20: 2)에 나타나는 출애굽 양식(Exodus-formula)에 잘 표현되어 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רַיִם מִבְּתַח עֲבָדִים)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카 아셰르 호체티카 메에레크 미츠라임 미베트 아바딤). 출 21장 2절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어근 עָבַד(아바드)와 יָצָא(야차)는 출애굽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³³⁾ יָצָא(야차)는 전형적으로 애굽의 종으로부터의 나옴을 묘사하는 동사이다(출 6: 6; 13: 3, 4, 20: 2).

출 21장 2-6절에는 직접적으로 출애굽 주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신 15장 12-18절에서 모세는 6년을 섬기고 방면되는 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대하게 대해야만 할 것을 권면하며, 그 이유로 출애굽에서의 경험을 상기시킨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עָבֵד 에베드)이었다는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신 15: 15). 신명기의 이러한 권면은 신명기가 출 21 - 23장의 율례(מִשְׁפָּטִים 미슈파팀)의 서두에 나타나는 종의 방면 법을 애굽에서의 종살이 경험에 비추어 출애굽기 단락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언약의 책”(סֵפֶר הַבְּרִית 세페르 하베리트)에 나타나고 있는 율례(מִשְׁפָּטִים 미슈파팀)의 서두에 히브리 종의 방면에 관한 규례(출 21: 2-11)를 배치함으로써 다분히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 언약을 맺기까지의 주제를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애굽에서의 종살이 경험에 근거하여 종들을 보다 인도주의적으로 대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출 21장 2-11절에서 인격적인 2인칭 구문으로 시작하여 3인칭으로 규정

32) 율례(מִשְׁפָּטִים 미슈파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에서 그들을 구속한 야웨와 시내에서 언약을 맺는 즉각적인 맥락(출 19-24장)에서 나타나며,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시내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는 출 1-18장은 보다 광범위한 맥락을 제공한다. 출애굽기 전체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바로의 집을 짓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야웨가 거하는 집을 짓고 야웨를 섬기는 야웨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제시한다.

33)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Press, 1967), 266쪽.

이 소개되는 것도 이 단락의 내러티브 맥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출 21장 2절은 2인칭 단수 동사를 사용하여 기술된 반면, 출 21장 4-11절은 3인칭으로 기술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들은 비인칭 양식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저자는 이 규례를 보다 인격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서두의 질을 2인칭으로 시작하였다. 2인칭 단수 “너”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개인을 지칭하며, 아웨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내러티브와 잘 부합된다(출 21: 1 참조). 출 21장 1절의 율례(מִשְׁפָּטִים 미슈파팀)의 소개에 이어 시작 부분(출 21: 2)과 율례(מִשְׁפָּטִים 미슈파팀)의 마지막 부분(출 22: 20[개역 21절]-23: 19)에 나타나는 규례들을 2인칭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내러티브 틀이 형성되었다.³⁴⁾ 스프링클(J. M. Sprinkle)이 올바르게 지적하였듯이, 본문의 저자는 이 규정의 서두를 2인칭으로 시작함으로써 그가 의도했던 바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 21장 3-7절의 규례를 2인칭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³⁵⁾

3. 신명기에 나타난 종의 방면 법

1) 신 15장 12-18절의 본문 번역

¹²너의 형제(אֶחָיִךָ 아히카) 히브리 남자(אִישׁ חֵבְרִי 하이브리)나 히브리 여자(אִשְׁתׁ חֵבְרִיָּא 하이브리야)가 너에게 팔렸을 경우, 그가 너를 여섯 해 동안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자유의 몸으로 내보낼 것이다. ¹³네가 그를 자유롭게 내보낼 때는 그를 빈 손으로 내보내지 말 것이다. ¹⁴너는 네 양무리 중에서와 너의 타작마당에서와 너의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하게 줄 것인데, 네 하나님 아웨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 ¹⁵너는 네가 종이었던 것과 네 하나님 아웨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다. ¹⁶그러나 만일 그가 너와 네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는 곳을 좋게 여겨 너에게 ‘내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¹⁷너는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영원히 네 종이 될 것이다. 또한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 것이다. ¹⁸그가 여섯 해 동안 품삷

34) J. M. Sprinkle, 윗글, 62쪽.

35) 윗글, 61-62, 98-99쪽. 비평학자들에 의하면, 본래 3인칭으로 이미 존재하였던 별도의 종에 관한 규례가 출 21장 1절에 이어 소개되는 까닭에 자연스러운 문맥을 형성하기 위하여 후대의 편집자가 3인칭 구문(“어떤 사람이 히브리 종을 사면 ...”)을 2인칭으로(“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수정하였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원본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2인칭으로 시작하는 현재의 본문은 현재 문학적 맥락에 잘 부합된다.

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그를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는 것을 너는 어렵게 여기지 말 것이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웨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2) 신명기에 나타난 종의 방면 법 비교

신 15장 12-18절은 출 21장 2-6절과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 출 21장 2-6절과 신 15장 12-18절은 공히 가난하여 주인을 섬기던 종이 완전히 독립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유의 몸으로 회복되는 주제를 다룬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또한 현저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본 단락에서는 이미 출애굽기에 나타난 종의 방면 법을 분석할 때 다루었던 부분들을 생략하고, 출애굽기와 신명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법과 다르게 종의 방면의 법을 전개한다. 먼저 신명기는 주인이 주제가 아니라, 가난하여 종으로 팔린 사람을 행동의 주체로 묘사한다. 출 21장 2절에서는 주인이 종을 샀지만, 신명기에서는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신 15: 12).³⁶⁾ 또한 출애굽기는 “네가 히브리 종을 샀을 경우 ...”로 시작하며 가난하여 남에게 팔린 사람을 종(**עֶבֶד** 에베드)이라 지칭하였는데, 신명기는 이 사람을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비록 그가 하는 일은 종과 동일한 어원의 동사 “섬기다”(**עָבַד** 에베드)에 의해 묘사되었지만, 이 동사는 광범위한 용례로 사용된다. 이 점에서 신명기 법은 출애굽기 법과 의미심장한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정형화된 용어 **עֶבֶד**(에베드)는 신 15장 17절에만 나타난다. 17절에서 가난으로 남에게 팔린 여자는 **אִמָּה**(아마)로 지칭되었다.

신 15장 12절은 “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언급된 가난한 자를 형제라고 부른다. 여기서 사용된 “형제”는 언약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원칙상 동등한 신분임을 나타낸다. 신 15장 12절은 문자적으로 “너의 형제(**אֶחָיִךָ** 아히카), 히브리 남자(**עֶבְרִי** 하이브리)나 히브리 여자(**עֵבְרִיָּה** 하이브리야)”이다. “히브리 남자/히브리 여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하류 사회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형제”와 동격

36) 여기에 사용된 **עָבַד**(아마헤르)는 동사 **עָבַד**(마하르)의 니팔형으로 니팔은 수동 또는 재귀의 의미를 지니나, 여기서는 재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맥콘빌(J. G. McConville)은 주장한다. J. G. McConville,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262 쪽.

으로 사용되었다.³⁷⁾

출애굽기의 법은 단순히 종의 방면만을 규정하지만, 신명기 법은 주인으로 하여금 종을 보낼 때 관대하게 베풀 것을 요구하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신 15: 13-14). 신명기에서는 주인이 관대하게 베풀어서 방면되는 사람의 존엄성이 명백히 강조되었다.³⁸⁾ 베푸는 내용은 명백히 야웨의 축복을 묘사하는 신명기의 전형적인 표현인 양 무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과 같은 땅의 산물로 구성되었다(14절; 또한 7: 13 참조).

주인이 종에게 관대하게 베풀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열거되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모든 사람이 누리야만 하였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신 15: 14b)는 베푸는 양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땅의 소산물을 누릴 방면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형제 이스라엘인으로 그 역시 이 복에 대한 정당한 몫을 누리야만 하였다. 관대하게 베풀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이스라엘인들도 야웨께서 그들을 방면시키기 전까지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방에서 다른 나라를 섬겨야만 했던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방면을 경험한 후 보아야 할 반응은 자신들에게 종살이를 하다 방면된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해야만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신과 그들에 대해 보여야만 하는 적절한 반응이었다(신 15: 15).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종살이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규례(신 15: 16)는 출 21장 5-6절의 규례와 차이가 있다. 출애굽기에서와는 달리, 신명기에서 주인집에 머무르고자 하는 결정은 방면될 때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인된 것이 아니다. 신명기는 아내와 가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신명기가 출애굽기의 법을 수정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여기 제시된 이유는 단순히 그가 현재의 편안한 처지를 만족해하기 때문이다(신 15: 16b). 자유를 찾아 독립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 15장 16절의 짧은 구절은 주인집에서의 노동 상황이 감당하기에 무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신 15장 17절에 소개되는 귀에 구멍을 뚫는 의식은 출애굽기와 동일하다.

37) A. D. H. Mayes, 윗글, 250-51쪽. 또한 앞의 각주 12번에서 다루었던 히브리(עֲבָדָה 이브리)에 관한 논의 참조.

38) 맥콘빌은 이것이 חֲפֻצָה 호프쉬 “자유의 몸”; 신 15: 12; 출 21: 2)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J. G. McConville, 윗글, 262쪽.

다만 신명기는 이 의식이 단순히 “문”에서 거행되었다고 언급한다. 신명기는 출 21장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해석자에 따라 성소 또는 법정으로 이해되어지는데, 그렇다고 신명기가 “하나님”을 생략한 것을 “세속화” 운동의 일환으로 볼 필요는 없다.³⁹⁾ 하나님을 생략한 이유는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할 때 제의적이거나 법적인 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신명기 특성에 기인한다. 이 의식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였다. 신명기 본문에서는 의식을 행하는 곳이 성소인지 아니면 주인집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가 주인과 종에게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기울이며, 의식과 관계된 요소를 생략하였다는 것이다.

신명기 법은 종의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다루는 것이 출애굽기의 법과 차이가 있다: “네 형제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신 15: 2).⁴⁰⁾ 여종도 주인집을 떠날 것인가 떠나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신 15: 17b). 따라서 이 법은 흔히 이해되듯이 남종과는 달리 6년을 섬긴 후에도 방면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אִשָּׁרָא**(아마/여종)에 관한 출 21장 7-11절의 법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신명기가 개정한 것이 아니라, 본래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해당되던 규정을 남종의 경우를 들어 예시한 출 21장 2-6절의 규정을 신명기가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나가는 말

종의 방면에 관한 법은 오경에서 출 21장 2-11절과 신 15장 12-18절에 나타난다. 레 25장 39-46절의 법도 종의 방면의 법을 다루지만, 이 법은 7년째 방면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희년에 일어나는 방면만을 언급하기에 본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출애굽기의 종의 법과 신명기의 법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차이점 또한 극명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시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본문의 문학적 맥락을 진지하게 취합과 동시에 공시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본문을 통일성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39) A. D. H. Mayes, *릿글*, 252쪽은 제의의 중앙화로 인해 성소에서 행하던 의식을 집에서 행함으로 세속화가 이루어졌다고 이해한다.

40) 여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왕하 8: 3) 여자도 역시 빚을 질 수 있었다.

출 21장 2-6절에 소개되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는 바로 이어 제시되는 여종에 관한 규례로 인하여 대부분 학자들이 남종과 여종에 관한 서로 다른 기준의 방면의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출 21장 2-6절은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히브리 종의 방면 법을 남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출 21장 7-11절의 법은 일반적인 여종의 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팔린 특별한 경우의 여종(אִמָּה)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일반적으로 신 15장 12-18절의 법은 출 21장 2-6절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보다 인도주의적 입장의 신명기주의자가 개정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출 21장 2-6절에서 일견 비인도적이고 가혹하게 보이는 윤리적 문제점들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방면된 종이 불확실한 미래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삶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인도주의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출 21장 7-11절에 소개된 결혼을 위한 목적으로 팔린 여종에 관한 법도 자칫하면 성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착취당할 수 있는 여종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출 21장 2-11절의 법은 즉각적인 문맥과 보다 넓은 내러티브 맥락의 관점에서 그 주제와 문체가 잘 부합함을 살펴보았다.

신 15장 12-18절에 소개되는 종의 방면의 법은 일견 출 21장 2-6절의 법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통시적 접근 방법은 이 차이점들을 신명기주의자 개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필요 없이 명제를 늘리지 말라는 오캄의 면도날 법에 따라, 신명기 법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최종 형태의 본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공시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신명기에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신학적 입장에 기초하여 신 15장 12-18절의 법은 히브리 종은 물론 심지어 여종까지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여 아웨께서 이들에게 베푸는 복을 공유하도록 이스라엘을 촉구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맥과 본문의 최종 형태를 중요시하며 종의 방면의 법을 소개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본문에 대한 문학적·신학적 분석을 함으로써 서로 상충된 본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본문이 각기 일관된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 참고문헌

- 엄 원식, “하비루의 반란과 혁명: 아마르나 서판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 5집(1998), 133-201쪽.
- 이 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제 29집(2008), 67-86쪽.
- Brown, F./S. R. Driver/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1979).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Press, 1967).
- Cole, R. A., *Exodu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3).
- Durham, J. I., *Exodus*, (Waco: Word Books, 1987).
- Eissfeldt, O.,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65).
- Fensham, F. C., “New Light on Exodus 21: 6 and 22: 7 from the Laws of Eshnunna,” *JBL* 78 (1959), 160-161쪽.
- Greenberg, M., *The Hab/piru*,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5).
- Hyatt, J. P., *Exodus*, (Grand Rapids: Eerdmans, 1971).
- Lemche, N. P., “Hebrew,”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3 (New York, 1992), 95쪽.
- Leuchter, M., “Manumission Laws in Leviticus and Deuteronomy: The Jeremiah Connection,” *JBL* 127 (2008), 635-653쪽.
- Levinson, B. M., “The Birth of the Lemma: The Restrictive Reinterpretation of the Covenant Code’s Manumission Law by the Holiness Code (Leviticus 25: 44-46),” *JBL* 124 (2005), 617-639쪽.
- Mayes, A. D. H.,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9).
- McConville, J. G.,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 Mendelsohn, I., “Slavery in the OT,” *IBL* vol. 4(1962), 384쪽.
- Phillips, A., “The Laws of Slavery: Exodus 21: 2-11,” *JSOT* 30(1984), 51-66쪽.
- Schultz, R., “~~ḥb~~,” *DOTTE*,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1997), 418-421쪽.
- Sprinkle, J. M., *The Book of the Covenant: A Literary Approac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 Van Seters, J., “Law of Hebrew Slave: A Continuing Debate,” *ZAW* 119 (2007), 169-183쪽.
- Wenham, G. J.,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Eerdmans, 1979).

검색어

여증

종의 방면 법

히브리 종

출 21장 2-11절

신 15장 12-18절

투고일: 2010년 12월 10일

심사일: 2010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13일

Comparison of the Manumission Laws in Exodus 21: 2-11 and Deuteronomy 15: 12-18

Jung Jin Chun, Ph.D.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ungkyul University

The manumission laws that stipulate a Hebrew slave should be released in the seventh year after serving his master six years, occur twice in the Pentateuch: Exodus 21: 2-11 and Deuteronomy 15: 12-18.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ersions are usually resolved by supposing that the laws simply emanates from different times in Israel's history. According to historico-critical scholars, the Deuteronomist who had humanitarian perspective revised the ethical problems raised from the earlier Exodus text (Exod. 21: 2-11). This study explores first the sociological and theological message of the manumission laws in its literary context and then explain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ersions using a synchronic approach rather than a diachronic while taking seriously the literary context of the final form of the text.

The literary approach adopted here looks at the text in a synchronic rather than a diachronic way while taking seriously the final form of the text. After

the presentation of the author's own translation on Exodus 21: 2-11 and the analysis of its structure, the exegesis on Exodus 21: 2-6 and 7-11 is undertaken in turn. The law which looks severe to Hebrew slaves is proven to have concern for them. This study shows that Exodus 21: 7-12 is not a general principle for the female slave but presents a particular case for אִשָּׁה who is sold for a purpose of marriage to a free man. Several features, usually considered by the hands of redactors, are shown to be integral and appropriate in the immediate and more wider narrative context.

Finally the differences between Exodus 21: 2-6 and its parallel law in Deuteronomy 15: 12-18 are explained without presupposing a complex historical development of Deuteronomistic History. This study provides a way of looking at the given text more integrally without presupposing various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ext.

Keywords

Female slave
Hebrew slave
Manumission law
Exodus 21: 2-11
Deuteronomy 15: 12-18